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개정(법률 제16684호, '19.12.3. 공포, '20.6.4. 시행)으로 시·도지사의 특구 지정 시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·분석 실시 의무화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 평가 의무화(매 3년)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대한 개선권고 등 조치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, 법 시행을 위해 평가의 내용 및 방법,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조사·분석 전문기관 제시 (안 제58조의2)

- 1) 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
- 2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3) 해당업무를 수행할 조직, 전문인력, 관련 조사·연구·평가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

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·도지사에게 대한 조치요구권 행사 및 특구 평가의 내용, 방법,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 (안 제60조의2)

- 1) 관광특구 평가 결과 ▲추진실적 미흡 시 개선권고 및 면적조정 요구, ▲특구 지정요건 미충족, 조치요구 미이행 시에는 지정취소 요구 등 조치요구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 마련
- 2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평가 시, 특구 지정요건 유지 여부,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,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노력 등 고려
- 3) 평가 90일전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지자체 통보,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한 특구 평가 추진

다. 관광특구 평가 업무 위임기관 구체적 명시 (안 제65조제1항)

- 1) 시행령 제58조의2 전문기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예정)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 제2항 중 “임야·농지·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”를 “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”로 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지정신청에 대한 조사·분석 위한 전문기관) 법 제70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3.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
 - 가.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 - 나.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
 - 다.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

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2(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면적조정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지정 취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적조정 및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지정 취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1. 법 제70조가 정한 관광특구의 지정요건
 2.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추진실적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노력
 3.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지역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 평가 시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평가 9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

‘제60조의 2’를 ‘제60조의 3’으로 한다.

제6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 평가 업무 : 제58조의2에서 정하는
전문기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관광특구의 지정요건) ① (생 략)	제58조(관광특구의 지정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<u>임야·농 지·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 활동과</u>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 트인 것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관광활동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<u>제58조의2(지정신청에 대한 조사· 분석 위한 전문기관) 법 제70조 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 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</u> <u>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</u> <u>3.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 춘 기관 또는 단체</u> <u>가.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</u> <u>나.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</u>

	<u>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</u>
<신 설>	<u>다.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</u> <u>제60조의2(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)</u> <u>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면적 조정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지정 취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적 조정 및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지정 취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<u>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 요구</u>

	<u>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시·도 지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<신 설>	<u>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</u> <u>1. 법 제70조가 정한 관광특구의 지정요건</u> <u>2.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추진실적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노력</u> <u>3.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<신 설>	<u>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3조 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지역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<u>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 평가 시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평가 9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</u>
<u>제60조의2(「건축법」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)</u>	<u>제60조의3(「건축법」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)</u>

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65조(권한의 위탁) ① (생략) 1~7. (생략) <신설>	제65조(권한의 위탁) ① (생략) 1~7 (생략) 8. <u>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 특구 평가 업무 : 제58조의2에서 정하는 전문기관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	
연락처	(044) 203 - 2878